

남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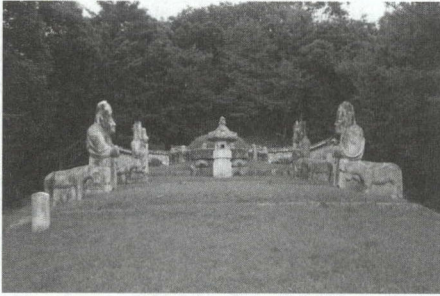
성 묘(成墓)

1. 연혁

묘 주 : 광해군 사친 공빈(恭嬪) 김씨
위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지정번호 : 사적 제365호
봉묘연대 : 1577년(선조 10)
전묘연대 :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에서 망우리고개를 넘어 경기도 남양주 도농삼거리에 이르면 춘천으로 가는 46번 국도와 양평으로 가는 6번 국도의 갈림길에 이른다. 이곳에서 46번 국도를 따라 경춘가도를 달리다 보면 남양주시청 못미처 금곡동 사거리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약 5분 정도 달리면 길가에 위치한 사릉에 도착한다. 바로 사릉 못미처 있는 하천과 다리를 넘지 않고 오른쪽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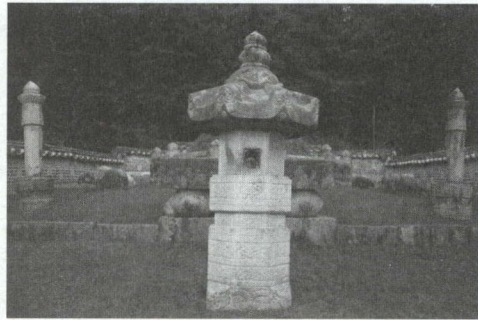


성묘 전경

약간 더 올라가면 성묘에 이를 수 있다.

성묘는 조선 선조의 후궁 공빈김씨(恭嬪金氏)의 묘소이다. 공빈김씨는 효철(孝哲)의 딸로 1551년(명종 6)에 태어나 선조의 후궁이 되었고, 1575년(선조 8) 광해군을 낳았으며 1577년에 죽었다.

묘역시설로는 곡장(曲牆), 봉분 주위의 난간석(欄干石), 석호(石虎), 석양(石羊) 등이 있으며, 봉분 전면에는 혼유석(魂遊石), 장명등(長明燈), 망주석(望柱石), 문인석(文人石), 무인석(武人石), 석마(石馬) 등이 있다. 비석은 남아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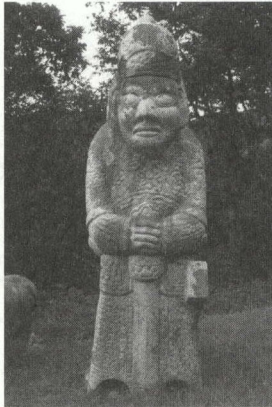
성묘 장명등과 봉분

로 나있는 좁은 도로를 따라 약 10여 분 들어가면 영락교회 공원묘지 입구에 이른다. 영락교회 공원묘지 안으로 더 올라가면 비탈진 언덕에 광해군 묘소가 위치하고 있고, 광해군 묘소가 있는 영락공원 묘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봉인사 방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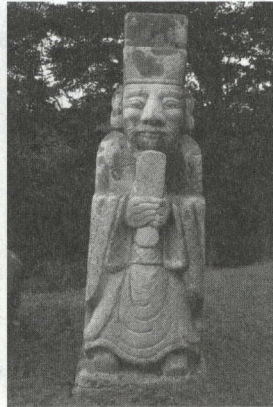
3. 묘주 소개

공빈 김씨(恭嬪 金氏, 1553~1577)는 조선 선조의 후궁이자 광해군의 생모

이다. 김해 김씨 희철의 딸로, 선조의 서장자인 임해군과 서차자 광해군을 낳고 1577년 5월 1일에 산후병으로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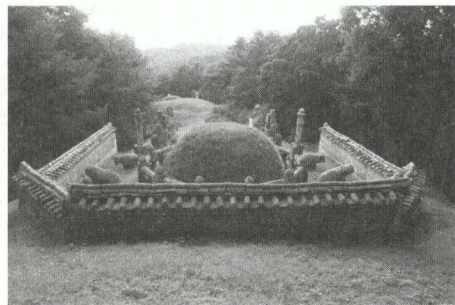
성묘 무인석



문인석

그녀는 선조의 총애를 받아 다른 후궁들이 선조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위독해지자 누군가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는 말을 선조에게 아뢰었는데, 그녀가 죽고난 후 또 다른 후궁인 인빈 김씨가 선조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광해군 즉위 후, 공성왕후(恭聖王后)로 추존되고 그 묘를 성릉(成陵)이라 하였으나, 광해군의 작위가 삭탈되면서 그녀도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갔다.



뒤에서 바라본 성묘 전경

4. 공빈 김씨 즐기

《宣祖修正實錄》卷11, 宣祖 10年 5月 1日(戊子)

恭嬪 金氏 卒 嬪是司圃 金希哲 女生 臨海 光海 二王子 至是以産病 卒 金氏 素有寵 後宮無敢問幸 及其病革 訴于上曰 宮中有仇我者 取吾 履隻 詛呪病我 而自上不覈發 今日之死 是上使然 死不敢怨惡也 上哀悼 殊甚 遇宮人多暴急 昭容 金氏 【後爲 仁嬪】 曲爲調護 頗揚嬪宿愆 上 不復哀念曰 渠負予多矣 自是 金昭容 特承寵遇而專房 非前比矣 【初 宮中自祖宗朝有言 金 姓害於木姓 故選女時常外之 上之臨御三嬪皆 金 氏 仁穆 繼中壺 識者疑其不吉】

5. 공빈 추송시책문

李廷龜, 《月沙先生集》卷58 冊文 恭嬪追崇諡冊文

恭以顯親報本 人子之至情 節惠易名 追崇之大典 斯彝倫之所係 亦古 今之攸行 恭惟氣凝天和 道符坤順 積德名閼 爰自塗山之肇基 率禮嘉祥 粵在文王之初載 芳猷克著於輔佐 令聞久播於宮闈 宜享大德之遐齡 擬奉 長信之至樂 何知奄棄乎世 屬予纔免於懷 音容莫攀 曷堪風樹之痛 歲月 屢變 幾纏霜露之悲 迄今嗣承乎鴻圖 實荷鞠育之洪造 嗟榮養之不逮 崇 貴何安 愴位號之始尊 顯揚當急 欲報罔極 願名無能 肆薦二字之稱 少展 終身之慕 謹奉冊寶 上尊諡曰恭聖 冀昭英鑑 俯諒精衷 玉檢金泥 耀貞輝 於不朽 天長地久 錫繁祉於無窮

6. 공빈추송옥책문

李廷龜, 《月沙先生集》 卷58, 冊文 恭嬪追崇玉冊文

事光簡冊 夙彰內贊之猷 慶徹神明 荐進追顯之號 情文爰備 悲喜俱深
恭惟飭躬幽閑 凝姿端淑 刑觀媿泐 協聖化於重華 詠播河洲 嗣徽音於太
妣 令聞方騰於彤管 仙馭奄隔於蒼梧 養莫逮於東朝 心詎安於南面 星霜
屢變 永懷欲報之忱 恩誥初頒 益結無涯之痛 曾因國誣之快雪 聿致宗祀
之增輝 惟先后輔佐之功 久而彌闡 在小子揄揚之典 今豈敢稽 肆獻不朽
之稱 用揭丕承之烈 摸天畫日 德何加乎 檢玉泥金 禮則然矣 臣不勝大願
謹奉冊寶 加上尊號曰明獻云云 伏惟冀賜英鑑 俯諒微衷 盡制盡倫 維新
厥命 俾昌俾熾 長發其祥

7. 공성왕후추봉

《光海君日記》 卷26, 光海君 2年 3月 29日(乙巳)

追尊私親 恭嬪金氏 爲 慈淑端仁恭聖王后 殿曰 奉慈 陵曰 成陵

여 백

광해군묘(光海君墓)

1. 연혁

묘 주 : 광해군과 광해군부인 유씨
위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지정번호 : 사적 제363호
봉묘연대 : 1641년(인조 19)
전묘연대 : 1643년(인조 21)
원묘형태 : 쌍분

2. 원묘 소개

서울에서 망우리고개를 넘어 경기도 남양주 도농삼거리에 이르면 춘천으로 가는 46번 국도와 양평으로 가는 6번 국도의 갈림길에 이른다. 이곳에서 46번 국도를 따라 경춘가도를 달리다 보면 남양주시청 못미처 금곡동 사거리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약 5분 정도 달리면 길가에 위치한 사릉에 도착한다. 바로 사릉 못미처 있는 하천과 다리를 넘지 않고 오른쪽으



광해군묘 전경

제와 국방에 주력하는 등 치적이 많았으나 인조반정으로 폐위되고 1623년 (인조 1) 3월 광해군으로 강봉되었으며, 같은 해 3월 폐비 유씨와 함께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제주도로 이배(移配)되었다.

1641년 7월 이배지에서 죽어 그 곳에 장사지냈다가 1643년 10월에 지금의 묘소로 천장(遷葬)하였다. 문성군부인 유씨(文城君夫人柳氏)는 지돈녕부사 자신(自新)의 딸로 1598년에 태어나 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1609년(광해군 1) 왕비로 진봉(進封)되었다.

1623년 광해군과 함께 폐출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으며 그해 10월 강화도에서 죽어 광주군 적성동에 장사지냈다가 광해군이 죽은 뒤 같은 묘역에 천장하였다. 묘는 쌍분(雙墳)이며 곡장(曲牆), 혼유석(魂遊石), 장명등(長明燈), 문인석(文人石) 등이 있다.

광해군 묘비 전면에 ‘光海君之墓(광해군지묘)’, 후면에 ‘辛巳七月初一日病卒於濟州命輟朝三日(신사칠월초일일병졸어제주명철조삼일)’

로 나있는 좁은 도로를 따라 약 10여 분 들어가면 영락교회 공원묘지 입구에 이른다. 영락교회 공원묘지 안으로 약간만 더 올라가면 비탈진 언덕에 위치한 광해군 묘소에 이를 수 있다.

광해군은 초기에는 빈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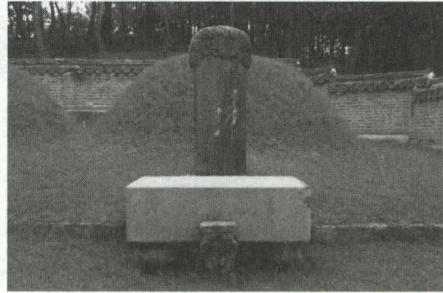
광해군묘

이라 새겨져 있다.

3. 묘주 소개

광해군(光海君, [1575(선조 8)~1641(인조 19)])은 조선 제15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1608년~1623년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이름은 혼(璉)이며, 선조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는 공빈 김씨(恭嬪金氏)이다.

비(妃)는 판윤 유자신(柳自新)의 딸이다.



광해군 부인 유씨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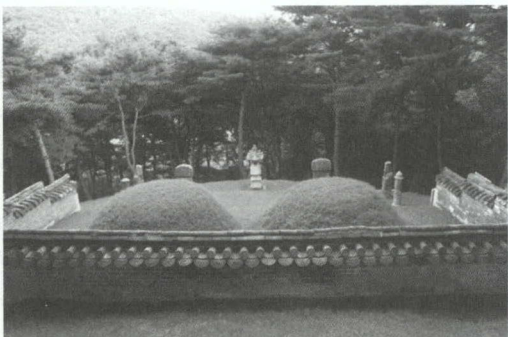
선조와 함께 의주로 가는 길에 영변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분조(分朝)를 위한 국사권섭(國事權攝)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뒤 7개월 동안 강원·



광해군묘 문인석

함경도 등지에서 의병 모집 등 분조 활동을 하다가 돌아와 행재소(行在所 : 임금이 멀리 거동하여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에 합류하였다.

서울이 수복되고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조선의 방위 체계를 위해 군무사(軍務司)가 설치되자 이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였다. 또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전라도에서 모병·군량 조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594년 윤근수(尹根壽)를 파견해 세자 책봉을 명나라에 주청했으나, 장자인 임해군이



뒤에서 바라본 광해군묘 전경

있다 하여 거절당하였다.

1608년 선조가 죽자 왕위에 오르고 이듬 해 왕으로 책봉되었다. 이에 앞서 1606년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 김씨(仁穆王后金氏)에게서 영창대군(永昌大君)이 탄생하였다.

광해군이 서자이며 둘째아들이라는 이유로 영창대군을 후사(後嗣)로 삼을 것을 주장하는 소북(小北)과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大北) 사이에 분쟁이 확대되었다.

1608년 선조가 병이 위독하자 그에게 선위(禪位)하는 교서를 내렸으나 소북파의 유영경(柳永慶)이 이를 감추었다가 대북파의 정인홍(鄭仁弘) 등에 의해 음모가 밝혀져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즉위한 후, 임해군을 교동(喬洞)에 유배하고 유영경을 사사(賜死)하였다.

당쟁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원익(李元翼)을 등용하고 초당파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려 했으나 대북파의 계략에 빠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611년(광해군 3) 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반대한 정인홍이 성균관 유생들에 의해 청금록(靑衿錄 : 儒籍)에서 삭제당하자 유생들을 모조리 퇴관(退館)시켰다.

이듬 해에는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으로 100여 인의 소북파를 처단했으며, 1613년 조령에서 잡힌 강도 박응서(朴應犀) 등이 인목왕후의 아버지 김제남(金悌男)과 역모를 꾀하려 했다는 허위 진술에 따라 김제남을 사사하였다. 또 영창대군을 서인(庶人)으로 삼아 강화에 유폐하였다가 이듬해 살해하였다.

1615년 대북파의 무고로 능창군 진(綾昌君恂)의 추대 사건에 연루된 신경희(申景禧)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1618년 이이첨(李爾瞻) 등의 폐모론에 따라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에 유폐시켰다. 이와 같은 실정은 대북파의 당론에 의한 책동으로 빚어진 일이었다.

전란으로 인한 전화(戰禍)를 복구하는 데 과단성 있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1608년 선혜청(宣惠廳)을 두어 경기도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고, 1611년 양전(量田)을 실시해 경작지를 넓혀 재원(財源)을 확보하였다.

선조 말에 시역한 창덕궁을 그 원년에 준공하고 1619년에 경덕궁(慶德宮 : 慶熙宮), 1621년에 인경궁(仁慶宮)을 중건하였다.

이 무렵 만주에서 여진족이 세력을 확장해 1616년 후금(後金)을 건국하였다. 후금의 강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포를 주조하고, 평안감사에 박엽(朴燁), 만포첨사에 정충신(鄭忠臣)을 임명해 국방을 강화하는 한편, 명나라의 원병 요청에 따라 강홍립(姜弘立)에게 1만여 명을 주어 명나라와 연합하였다.

그러나 부차(富車)싸움에서 패한 뒤 후금에 투항하게 하여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능란한 양면 외교 솜씨를 보였다. 또한, 1609년에는 일본과 일본송사약조(日本送使約條 : 己酉約條)를 체결하고 임진왜란 후 중단되었던 외교를 재개했으며, 1617년 오윤겸(吳允謙) 등을 회답사(回答使)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병화로 소실된 서적의 간행에도 노력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용비어천가》·《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 등을 다시 간행하고, 《국조보감》·《선조실록》을 편찬했으며, 적상산성(赤裳山城)에 사고(史庫)를 설치하였다.

한편, 허균(許筠)의 <홍길동전>, 허준(許浚)의 《동의보감》 등의 저술도 이 때 나왔다. 외래 문물로는 담배가 1616년에 류큐(琉球)로부터 들어와

크게 보급되었다.

세자로 있을 무렵부터 폐위될 때까지 성실하고 과단성 있게 정사를 처리했지만,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대북파의 장막에 의해 판단이 흐려졌다. 또한 인재 기용에도 파당성이 두드러져 반대파의 질시와 보복심을 자극하게 되었다.

뒷날 인조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책략과 명분에 의해 패륜적인 혼군(昏君)으로 규정되었지만, 실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같은 반정에 의해 희생된 연산군과는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

4. 왕세자 책봉 주문

《宣祖實錄》卷70, 宣祖 28年 12月 26日(甲子)

奏請使齋奏赴京 其文曰 朝鮮國王 臣 李昞 謹奏爲再疏 未蒙俞允 下情愈益切迫 懇乞聖恩 特許亟封世子 以定小邦危疑事 伏念 臣守藩無狀 幾墜先臣所傳之緒業 今日之所冀以蓋愆者 惟有擇嗣一事 而小邦國勢人心 又有大可憂者 不得不更陳情願 濫希恩許 瀆擾之罪 固當萬死 臣不幸未有嫡子當嗣 而庶子之中 爲長者曰 臨海君 瑛 次者曰 光海君 璵 蓋二子同母 而母亡 臣固無他意於取舍也 獨臣雖昏愚 爲父宜知其子 且二子俱已成長矣 臣豈不有以豫察付畀之堪否耶 瑛 性質凡近 臣爲擇師傅 授以經訓 求以變化氣質 而既長之後 亦不遵臣戒 蠱於外誘 多冒衆怒 君國子民之寄 決難承當 曩於 萬曆 二十年 小邦猝被寇禍 國內崩潰 臣分遣諸子 號召四方 以圖恢復 而 瑛 往 咸鏡道 不善綏集 終陷賊中 璵 早自好學 聰明端厚 又能斥去紛華 簡儉自奉 臣以謂爲臣之子 此足爲賢 嗣續

之托 夙有所屬 而尚不敢遽其事 及在避賊之日 平壤 見陷 事無可爲 則臣要行赴懇於父母之邦 自往 義州 而以 義州 正當賊衝 臣勸 瑄 速行 則 瑄 涕泣言曰 今日之事 惟進往東南 通一國氣脈 然後庶或可濟 江界地窮 入而必亡 乃犯霧露 披荊棘 出平壤 黃海 東至於江原道 伊川縣 所過傳檄招募 諭以大義 林藪迸竄之民 聞聲仝集 旬日之間 得衆數萬 遂北窺 咸鏡 南通畿邑 且遏 黃海 諸路 使 平壤 之賊 後顧而不即西向 於是忠清全慶之民 始知臣父子絲命猶存 皆思奮義 爭起殺賊 瑄 又以臣在西聲勢相懸 還往 平安道 成川府 調遣陪臣 李鎰 等 協助臣所遣諸將 堵截順安 等處(順)[賊]搶之路 以待天兵之至 天兵既至 則奔走 肅川永柔龍崗之間 督運芻糧 接濟軍前 凡所駐筭經行之地 去賊窟皆不過二三舍之遠 此誠出萬死一生之計 賊破之後 還奉廟社主 迎臣於定州 此天朝諸將官之所目見 當此之時 臣栖泊一隅 所恃以有望者 徒以 瑄 在耳 監撫之寄 一日爲急 瑄 既陷於賊 其生其死 莫得聞知 而 瑄 之勞績已著 則主器之重屬之長乎 屬之賢乎 臣至此 亦不得固守常經 而 瑄 亦無所辭於讓矣 及 瑄 自賊中還 則驚憂成病 尤不能存省人事 而 瑄 於兄弟之間 猶且友敬日篤 一國之人 所共明知 經略臣 宋應昌 亦見 瑄 爲人心所歸附 幹蠱有屬 爲之題請 經理 全慶軍務 而瑄即前往 全羅道 全州 等處 撫摩瘡痍 召集散亡 仍調兵選將 儲峙糧餉 全慶之民 亦無不愛戴 咸願早定名號 故臣於立嗣一節 不復致疑 初疏 只照例請封 至於再疏 始舉耆老文武陪臣合詞之請 此實出於群情之不可抑 非臣所得爲(己)[己]子張皇也 而又未得蒙允 小邦愚下之民 不能深曉原降勅書內事意 徒以恩典久闕 益生疑惑 憂虞之勢 有甚於日前 此所以疆事糾紛 宗祊震懼 而臣之祈奏 愈益懇迫 而不已者也 臣受恩罔極 無路 報答 常以爲事君不欺 庶足以少效愚衷 豈有一毫修飾情形 而重臣不忠之罪也 倘臣父子及 瑄 兄弟之間 少有可疑

則是臣一家 異日無窮之禍 臣何敢不爲致謹 以誤大事 小邦經變之後 人心危懼 易以動搖 而臣又稟[疾][質]羸弱 自遭患難 疾病轉加 常有莫保朝夕之慮 深恐一朝而有不早定之悔也 伏乞皇上 俯察微情 曲遂至願 俾臣國勢危而復安 人心渙而復合 則臣雖溘先朝露 而亦得以瞑目地下矣 緣係再疏 未蒙俞允 下情愈益切迫 懇乞聖恩 特許亟封世子 以定小邦危疑

5. 광해군 즐기

《仁祖實錄》卷42, 仁祖 19年 7月 10日(甲申)

光海君 以是月初一日乙亥 卒于濟州 圍內 年六十七 訃聞 上輟朝三日 時 李時昉 爲 濟州 牧使 卽掙鎖開門 斂殯以禮 朝議皆以爲非 而識者是之 光海 之自 喬桐 遷 濟州 也 有詩曰:風吹飛雨過城頭 瘴氣薰陰百尺樓 滄海怒濤來薄暮 碧山愁色帶清秋 歸心厭見王孫草 客夢頻驚帝子洲 故國存亡消息斷 烟波江上臥孤舟 聞者悲之 至是 禮曹【判書 李顯英 參判 沈諮】 啓曰 光海 積失人心 天命歸于殿下 而殿下之篤念 光海 恩禮備至 遜位垂二十年 克終天年 殿下之聖德 無愧於古昔 傳之天下後世 豈不美哉 第念 義重宗社 迫於臣民之請 雖有放廢之舉 其於喪禮 則視它內宗 似爲有間 自上或於內庭 一次舉臨 百官亦於各衙門 變服會哭而止 則其於情禮 似無所憾 請議大臣 左議政 申景禎 議曰 旣云自絕于天 而臣民之所共棄 則衣衾棺槨之具 亦足以盡聖上骨肉之私恩 至於大內舉臨 百官變服會哭之節 該曹所啓 未可知也 右議政 姜碩期 以爲 光海之喪 視它內宗 似爲有間云者 或不無所見 但念 光海 得罪倫紀 自絕于天 宗社臣民之所共棄 而殿下篤念親親之義 備盡恩禮 竟使得終天年 及聞其喪之後

特遣禮官 中使護喪 聖上之待 光海 終始無憾矣 殿下若非違豫之時 則以骨肉之情 自內一次舉臨 容或一道 至於百官變服等節目 大義所在 恐難輕議 燕山之喪 已有前規 宜令禮官 參商舉行 上是 景禎 議 禮曹又啓曰 濟州之喪 與 江華 有異 【文城夫人 在江華 時先逝故云】 初喪棺斂等事 想已舉行 而第念 海外之事 凡具草草 其於必誠必慎之道 恐或欠缺 如不得已改棺易斂 必待發引上來之後 多官會同 廣議爲之 初喪所用 姑勿下送 發引諸具 令該曹爲先下送 且斂殯之後 不可仍在圍籬之中 出殯於官舍淨潔處 凡干奠獻之物 令本官精備 依禮設行 本道監司進到海上 凡事檢飭宜當 上從之 以蔡裕後 爲禮曹參議 與中官偕往 濟州 護其喪 上欲行素膳七日 藥房及政院諸臣相繼陳啓以爲 禮官之請以停朝 已涉非禮 況當違豫之日 不宜行法外之禮 請於過停朝後 卽復常膳 上從之 禮曹又啓曰 燕山之喪 葬以王子 今亦依此 一等禮葬何如 答曰 依啓 山所監役官 亦令擇送 光海 三年喪後 光海及文城夫人 家廟 墓祭 依 燕山 祭例 使其女子主之 【燕山 以其外孫主祀】

6. 문성군부인 즐기

《仁祖實錄》卷3, 仁祖 元年 10月 8日(乙丑)

文城君夫人 柳氏 卒于江華圍籬 上下教于該曹曰 廢妃病逝 予甚驚悼 其斂殯時所用衣衾及棺板等物 急速下送 禮曹啓曰 此喪與廢嬪之喪有異 應行喪禮 令儒臣博考 且令春秋館考見實錄 據禮施行 俾無未盡之事 初喪所用衣衾諸具 令該司罔晝夜下送 且自明日 停朝市何如 從之